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2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9 -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3누35885 취득세부과처분무효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◯◯◯◯시 ◯◯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23. 2. 8. 선고 2022구단10927 판결
변 론 종 결	2023. 9. 14.
판 결 선 고	2023. 10. 19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1. 7. 15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7,282,56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2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4쪽 3행의 "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인바, 위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경우"를 "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,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었는바,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경우"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5쪽 14행의 "갑 제5호증의 기재"를 "갑 제5, 8호증의 각 기재"로 고쳐 쓰고, 제5쪽 17행의 "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,"를 "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(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9. 20. 선고 2021가단6218 판결),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(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6. 16. 선고 2022나41356 판결),"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6쪽 첫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이에 대하여 원고는,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분명히 구분되는 별개의 부동산이고,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(이하 '이 사건 조항'이라 한다)이 민법에 우선할 수는 없으며, 이 사건 조항은 폐지될 예정이므로, 이 사건 토지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주택인 안산시 상록구 L건물, H호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2

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, 이 사건 조항은여기서의 '주택'은 '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,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'고 분명히 정하고 있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. 여기에 ① 이 사건 조항은 2020. 8. 12. 법률 제1747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조항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및 1세대가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게 되었는데, 그 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며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(위 법률 개정이유 참조), ② 그와 같은 목적 하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어떻게 정할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재량이 인정되고, 중과세 적용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규정을 둔 이 사건 조항이 위헌적 법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, ③ 이 사건 조항이 폐지되거나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,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또한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22. 9. 7. 선고 2021누67161 판결을 원고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.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20. 8. 12.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2조의2 제1항[1] 후문에서 '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

1)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(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)
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"이란 국내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2

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'고 규정함에 따라 쟁점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, 오히려 위 조항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, 이후 2020. 8. 12. 위 시행령 조항은 폐지되면서 같은 취지의 조항이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(이 사건 조항)으로 신설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. 따라서 위 판결은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.

재판장 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에 주택(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.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.